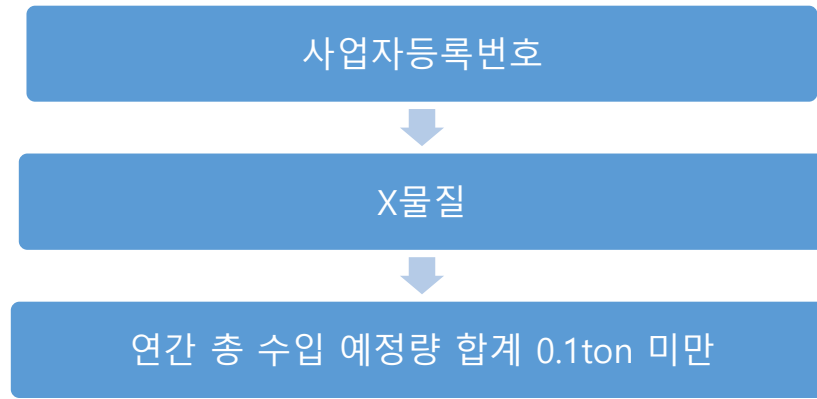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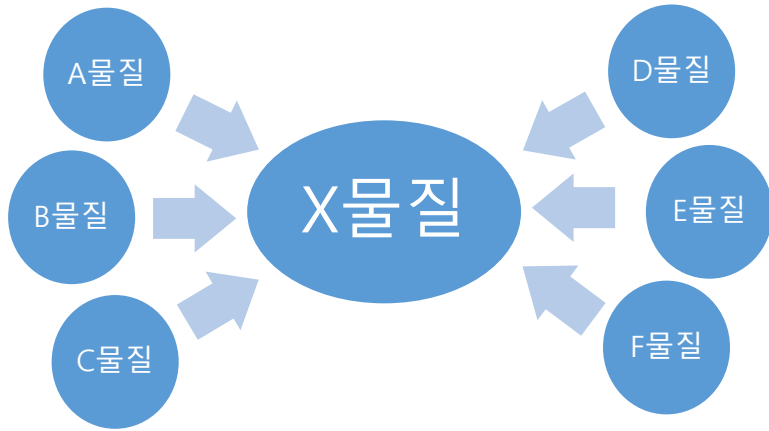


# 영업비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신고면제확인 신청방법

## 신청 시 필수확인사항

1.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**연간 총 수입예정량 합계 0.1ton이상** 수입이 **불가**합니다.  
(화학물질,고유번호 알 수 없는 화학물질들(A, B 등)은 하나의 신규화학물질(X물질)로 보며, 총 합산 기준으로 적용)



2. 유해화학물질은 영업비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외 제조·생산자가 유해화학물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 **유해화학물질**에 해당 할 경우 영업비밀 신청이 **불가**합니다. (화학물질정보시스템 [ncis.nier.go.kr/main.do](http://ncis.nier.go.kr/main.do) 검색)

## ※안내※

선임된자의 신청 여부는 환경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로 유권해석이 완료되면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.

# 영업비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신고면제확인 신청방법

• 제조/수입 구분 : 수입    • 면제 구분 : 신고면제     선임된 자

• 신청인 (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)

상호(명칭)			
사업자등록번호			
성명(대표자)			
담당자 성명	연락처	이메일 주소	
소재지(사업장)			
전화번호	팩스번호		
기업구분	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		

• 신청 사항

화학물질의 구분	<input type="radio"/> 기존화학물질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신규화학물질	선임사실신고증 번호	
화학물질명* <input type="checkbox"/> 총칭명	<input type="text" value="상품명(영업비밀)"/>	※ LOC, MSDS에 기재된 동일 상품명 입력 후 "(영업비밀)" 문구 추가	
CAS No	<input type="text" value="공란"/>	고유번호(KE NO)등	<input type="text" value="공란"/>

\* CAS No. 없을 때 필수 제출서류

1. 구조식&분자식(고분자인 경우 단량체 정보)

2. 아래의 ①,②번 중 택 1

① STN or Scifinder 검색결과자료(구조식, 분자식으로 검색한 결과만 인정)

② CAS No. 여부에 대해 언급한 제조사확인서(LOC 등)제출

\*Mypage>관리상품 에서 상품정보를 등록한 후 상품을 선택하세요

선택항 삭제

상품 검색

상품명    →    LOC, MSDS에 기재된 동일 상품명 입력

# 영업비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신고면제확인 신청방법

수입(수출)국\*  자료보호신청 여부\*  해당  해당없음

연간제조(수입)예정량(톤)\*  금회 제조(수입)량 (톤)\*

※ 영업비밀 수입 신청 건 연간 총 수입 예정량 **합계 0.1 ton 미만** 수입 가능(수입량 제한적) = 10 kg

면제확인대상 및 사유\* 연구개발용-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

·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유해성 분류 유해성 분류 유해성 분류

표시사항보기

· 연구 개발 화학물질 사용용도

연구개발용-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 
연구개발용-생산공정을 개선·개발하기 위한 경우  
연구개발용-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 
연구개발용-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

→ 연구개발용 선택(택 1)

연구개발 기간\*  ~

소요기간(일) 자동계산 NaN 연구개발기간 내 총 제조·수입 예정량(톤)\*  = 0 kg

· 연구개발 기관

선택행 삭제

상호(명칭)*	사업자등록번호*	대표자*	담당자성명*	연락처*	주소*	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text" value="상호(명칭)입력"/>	<input type="text" value="사업자등록번호 입력"/>	<input type="text" value="대표자 입력"/>	<input type="text" value="담당자성명 입력"/>	<input type="text" value="연락처 입력"/>	<input type="text" value="주소 입력"/>

· 필수 증빙(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확인서)\*

# 영업비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신고면제확인 신청방법

· 필수 증빙(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확인서)\*

행추가

\*22년 3월 1일 접수건부터 해당 양식만 사용가능(이전 양식을 사용할 경우 보완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
(양식)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확인서

첨부 파일

업로드 해주세요

1.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확인서

Upload

· 기타 증빙

\* 등록 등 면제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

\*첨부파일명이 일본어나 특수문자가 포함되면 업로드가 불가합니다.

행추가

첨부 파일

업로드 해주세요

2. 유해화학물질 없음을 증빙자료(LOC)

Upload

3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
## 신청 시 제출서류안내

1.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확인서: (양식)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확인서 클릭 후 양식 다운로드
2. 유해화학물질 없음을 증빙자료(LOC):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사가 『화학물질관리법』 의거한 양식으로 작성
3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: 수입자가 『산업안전보건법』에 의거하여 16가지 항목을 한글로 작성  
단, 아래 ① or ② 에 해당할 경우 해외제조사가 작성한 영문 MSDS 제출 가능
  - ① MSDS 2번 항목 유해성, 위해성이 없는 경우
  - ② 실험실에서만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화학물질('온라인신청사항-구체적용도'란에 해당 내용 필수 기재)

# 영업비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신고면제확인 Q&A

- Q: 영업비밀 화학물질에 대한 개수 제한이 있나요?
- A: 영업비밀 화학물질에 대한 개수 제한은 없으나 사업장 기준 연간 총 수입예정량 합계 0.1ton 미만 수입이 가능합니다.
  
- Q: 영업비밀 화학물질의 연간 총 수입예정량 합계 0.1ton 미만 수입 기준이 궁금합니다.
- A: 여러 개의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화학물질의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모두 동일한 하나의 화학물질(X)로 간주합니다. 즉 사업장에서 영업비밀로 신청한 X의 연간 총 합이 0.1ton 미만이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
  
- Q: 수입하는 제품에 몇 개의 영업비밀 화학물질이 있는지 모를 때 어떻게 하나요?
- A: 제품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한 개의 화학물질로 보고 제품 내 함유량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
- Q: 수입하는 제품의 영업비밀화학물질의 함량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?
- A: 최대 함량을 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
- Q: 선임된 자(OR)로 영업비밀 화학물질로 신청이 가능한가요?
- A: 선임된 자는 현재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진행중입니다. 환경부 답변에 따라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
  
- Q: CAS No.가 없는 화학물질도 영업비밀 화학물질인가요?
- A: CAS No.가 부여되지 않은 것인지,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제조사에 확인해야 합니다.

# 영업비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신고면제확인 Q&A

- Q: 영업비밀 화학물질이어서 유해화학물질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나요?
- A: 유해화학물질은 영업비밀 화학물질로 면제확인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화학물질정보시스템(NCIS)에서 해외제조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  
→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LOC 작성 시 유해화학물질 여부 확인
- Q: 영업비밀 화학물질은 자료보호신청이 가능한가요?
- A: 자료보호대상 화학물질은 신청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영업비밀 화학물질은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료보호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Q: MSDS 제출 시 '실험실에서만 연구개발하는 화학물질'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?
- A: 『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30호 제11조제2항(MSDS작성방법)』에서 '실험실에서 시험·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'인 경우만 영문 MSDS 자료로 인정됩니다. 실험실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한글 MSDS자료를 제출 바랍니다.
- Q: 제품에 공개된 화학물질은 유해성·위험성이 있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은 유해성·위험성이 없습니다. 이 경우 영업비밀 화학물질만 면제신청하면 영문MSDS 제출이 가능한가요?
- A: 제품 기준 유해성·위험성이 있는 경우 한글 MSDS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영문MSDS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